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감독 근거 신설
(안 제15조, 제18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안 제18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이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1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하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등급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 4등급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5등급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를 구분하여 지정하였을 경우 그 업무의 내용과 기능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31조제6항제1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취득 의무 건축물은 제12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을 “따른”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가목 및 제42조의4제3항제11호가목 중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u>	<u><삭 제></u>
3의2. ~ 5. (생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u>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u>) ① (생략)	제12조(<u>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u>	② <u>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하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등급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 4등급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5등급
<u><신 설></u>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현 행	개 정 안
	<u>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를 구분하여 지정하였을 경우 그 업무의 내용과 기능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 <u>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다. <u>제18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u> <u>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31조제6항제1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u> <u>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u>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의2 제1항 관련)

요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건축물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가. 신축 나. 건축물의 전부를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호	100
나.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법 제41조제1항 제2호	100

제출한 경우		
다.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3호	200
라.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4호	200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법 제14조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5호	300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15조의2를 위반한 경우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6호	100
사.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7호	50 100
아.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u>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u>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u>	법 제41조제1항 제8호	50 100
자.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9호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4091